#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명 칭) 본 규정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지부 정관에 의거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선거일)

지부의 선거는 운영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① 이사회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할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을 1인 이상 선임한다.

- ② 현직 임원,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과 당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선관위원이 중도에 사퇴할 시, 이사회는 즉시 후임 선관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선관위원의 임무)** ① 모든 선거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선관위원에게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은 사무 처장의 도움을 얻어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 1. 선거 공고
- 2. 선거 관련 문서, 양식 등의 검토, 배포
- 3. 후보 접수와 관리, 자격심사
- 4. 선거참여의 독려
- 5. 선거부정행위의 적발, 조사 및 판정
- 6. 선거당일 관련 사무 관장
- 7. 투, 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선관위원은 선거과정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선거부정이나 이의신청 등의 문제없이 당해 선거가 완료된 시점에서 자동 퇴임한다.

제6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지부의 정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정회원 자격은 지부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4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등록 기간) 선관위원은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해 후보등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후보등록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 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입후보 신청서
- 2. 후보 추천서
-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추가 등록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입후보자 공고) 선관위원은 후보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입후보자에 대한 약력, 출마의 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운영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 2. 공고 방법은 선관위원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운영회원들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제11조 (입후보 사퇴) ① 사퇴는 입후보자 공고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서명이 들어간 사퇴서를 선관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입후보자 공고 후 사퇴 시 선관위원은 투표 실시 전에 사퇴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의 범위) 후보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24:00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거운동원은 둘 수 없다.

- 1.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을 통해 사무처의 회원 이메일 발송 시스템으로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낼 수 있다. 단, 그 횟수는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하며, 후보자는 사무처에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 2.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나 카페 등의 개설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운영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 3. 회원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 4.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선관위원의 주관 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부당 행위의 제한 및 후보자격 박탈) ① 선거운동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사실 공포, 비방 등의 행위

- 2. 금품 살포나 접대 행위
- 3.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유인물 발간, 배포 행위
- 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 5. 투, 개표 사무 방해 행위
- 6. 다른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 행위
- 7.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상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원은 행위의 경중을 가려 경고, 시정조치, 후보자격 박탈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원칙과 선거의 성립) ① 선거권을 가진 운영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는 투표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선거는 회원 총회에 참석한 선거권을 가진 운영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성립한다.

제15조 (투표용지)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소정양식으로 사용하며 선관위원의 인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투표시간) 선거는 총회 개회 이후부터 폐회 전에 시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 (투표) 선거권을 가진 운영회원에게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고 투표를 하게 한다.

#### 제18조 (기표방법)

-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 입후보자 중에서 선호하는 후보 1인에게 기표한다.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 중에서 선택하여 기표한다.
- ② 입후보자가 정관에 따른 선출 이사나 감사의 최대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용지에 표시된 입후보자 중에서 정관 상 최대 선출 인원의 수 이내에서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 ③ 입후보자가 정관에 따른 선출 이사나 감사의 최대 인원수와 비교하여 동수 이하일 경우, 투표용지에 표시된 입후보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중에서 선택하여 기표한다.

제19조 (선출) 총회에 참석한 선거권을 가진 운영회원의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당선자를 선출한다.

**제20조 (결선투표)**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거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 유효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 (재투표) ① 개표 결과 과반수 미만의 투표로 선거가 성립하지 않거나, 선출된 이사와 감사의 수가 정관에 따른 최소 이사와 감사의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후보를 제외하고 재투표

- 를 실시한다. 단. 재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재투표를 실시하여 정관에 따른 최소 이사와 감사의 인원수 이상 선출되면 투표를 종료한다.

제22조 (개표와 결과 공표) ① 개표는 사무처나 총회참가자의 도움을 얻어 선관위원의 주관 하에 진행한다. 선관위원은 개표 전에 계수원과 개표 참관인을 총회에 참석한 운영회원 중에서 각 2인 이상 정하여야한다.

- ②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고 총 투표 수를 세어 선거의 성립여부를 확인한다.
- ③ 선거 성립이 확인되면 개표를 진행하고 참관인의 확인을 거친 후, 이의가 없을 시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 ④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거의 개표 결과는 당선자의 득표수와 함께 발표한다. 찬반투표일 경우에는 찬성, 반대의 수와 함께 발표한다.
- ⑤ 이사와 감사 선거의 개표 결과는 선출 여부만 공표하며, 개별 후보자의 득표수나 찬성, 반대의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규정된 투표용지라도 선관위원의 인이 없는 경우
- 3. 전혀 기표하지 않거나 선출할 인원의 수보다 많이 기표한 것
- 4. 후보자란의 기표선상을 현저히 벗어나 기표한 것
- 5. 투표용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제24조 (이의제기 및 처리) ① 투. 개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입후보자는 개표종료 후 즉시 선관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원은 투.개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받으면 즉시 판정하되, 선거권이 있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그 효력을 결정한다.

**제26조 (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선관위원은 선거절차가 종료된 이후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이를 4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2009.4.25>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에 관한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11.22>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에 관한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 부칙 <2016.8.20>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에 관한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16년 8월 20일 개정 시행한다.